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91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곽규택 · 조승환 · 박지원
김용태 · 유상범 · 신성범
김상훈 · 강대식 · 배준영
강승규 · 조지연 · 강명구
서천호 · 최은석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군·구로,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관광산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은 적은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구축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

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 ----- ----- ----- -----.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